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,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(**안 제명, 제1조**)

- 제명변경 :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
 →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자활기금의 사업 범위 조정(**안 제3조제4호, 제5호**)

-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고
- 자활기금의 용도 중 사업의 한도 제한을 삭제

○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 자금 이자율 및 상환 연체율 인하 조정(**안 제8조제3항**)

- 이자율 : 당초 5% → 2%,
- 상환연체율 : 연15% →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('09.10.12～'09.11.1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 : 붙임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

6. 참고사항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
○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

제8조제3항 중 “연 5%”를 “연 2%”로 하고, “연 15%의 연체이자”를 “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	**제명**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"영" 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의 범위) (생 략) 1. ~ 3. (생략)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(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) 〈신설〉 5. (생략)	**제3조(사업의 범위)**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〈단서 삭제〉 5.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~ ② (생략)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%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%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 ④ (생략)	**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%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